긴급 보조금
(Emergency Assistance)

긴급 보조금은 자연 재해 또는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부터 재정적 구제를 위한 일회성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최대 $5,000 이며 액수는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 또는 예기치 않은 필요에 대한 지원

예상치 못한 일 또는 자연 재해 피해로 인해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상의하거나, 본인이 목사인 경우 노회와 상의해서 공동부담 보조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또는 노회가 긴급 보조금을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은 회원 그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국은 지원을 배분하기 전에 신청자의 재정적, 개인적 요건 및 자원을 고려합니다.

보조금 액수

보조금은 필요에 따라 수백 달러부터 $5,000 까지 지급되며, 개인당 12 개월 동안 $15,000 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긴급 또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필요가 있어야 하고,
- 미국장로교 또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개체교회, 노회/대회, 교단 기관 또는 제휴 단체*에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연금국**을 통한 하나 이상의 연금국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베네핏 플랜(Benefits Plan)에서 퇴직 연금 또는 유족 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제휴 단체에는 노인 주택 및 보육 시설, 대학, 캠프 및 컨퍼런스 센터가 포함됩니다.*
***과거 가입자 또는 직원 지원 플랜(Employee Assistance Plan)에만 가입한 경우는 긴급 보조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보조금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금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승인하지 않습니다.

- 고용주가 직원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 노회 또는 고용주가 퇴직 직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긴급 보조금
(Emergency Assistance)

- 실업 수당 지급 또는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 만 65 세 이전에 은퇴하거나 사회 보장 혜택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 신청자에게 대출하기 위한 경우
- 심각하고 장기적인 질병, 장애 또는 이혼으로 인한 경우와 같은 특정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 주택 또는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 일상적인 주택 또는 차량 유지 보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 신용카드 결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 법률 비용, 벌금, 처벌 또는 세금(SECA 또는 FICA 수당 포함)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 베네핏 플랜(Benefits Plan)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경우

이 프로그램은 건강, 주택 또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보장을 대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긴급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 증권을 검토하거나 클레임을 제출하십시오. 의료비에 대한 긴급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800-PRESPLAN(800-773-7752)(TTY: 711) 또는 memberservices@pensions.org 로 연금국에 연락하십시오. PPO, EPO 또는 HDHP 의료 옵션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855-497-1237(TTY 711)로 Quantum Health 케어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거나 myqhealthpcusa.org 를 참조하여 베네핏 플랜(Benefits Plan)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개별 신청

고용주 또는 노회가 긴급 보조금을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과 보조금 신청 타당성을 살펴보시고, 작성한 긴급 보조금 신청서를 필수 관련 문서와 함께 연금국 (memberservices@pensions.org)으로 제출하십시오.

자연 재해 피해자 단체 신청

자연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 고용주(직원인 경우) 또는 노회(목사인 경우)에 문의하십시오. 피해 대상자 규모를 연금국 관계 관리자 또는 교회 상담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연금국은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를 받은 후 긴급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자연 재해 그룹 보조금은 지급을 관리하는 미국장로교 고용주에게만 제공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800-PRESPLAN(800-773-7752)(TTY: 711)으로 연금국에 문의해 주십시오.